

NEWSLETTER 991

May 3, 2024

제 9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요약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제2조의2(탄력세율)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생략)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III. 시행일자

- 2024년 5월 1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 Director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김기림 / Asso

T 02-6011-3025
E gr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